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체계 고찰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Adequacy Review System of Public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

김보람(Kim Boram) · 김순희(Kim Soonhee)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2. 공공표준의 표준화 이력과 적정성 검토 현황
- 3. 표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국내외 사례
 - 1)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 2)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
- 4.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개선 방안
 - 1) 제도적 보완
 - 2) 세부 절차 및 평가기준 마련
- 5. 결론

^{*} 본 연구는 김보람의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borambonnie@daum.net)(제1저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교신저자).

[■]투고일: 2022년 12월 30일 ■최초심사일: 2023년 01월 02일 ■최종확정일: 2023년 01월 25일

[■]기록학연구 75, 299-328,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5.299

〈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기록관리 공공표 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표준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기록원이 추진해온 표준화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표준명칭의 변경 등 단순개정이 주를 이루었고 표준별 표준화의 빈도수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결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표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세부절차의 마련, 적정성 검토 평가기준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록관리표준, 기록관리 표준화, 표준화 정책, 적정성 검토, 기록관리표준 관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procedure of the adequacy review system of public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 developed and dissemin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o explore improvements to utilize them as basic data to solidify the operation of standards. The study identified the shortcomings of the system with exampl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Korean industrial standards. It also analyzed the history of standardization promo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of them are simple revisions, such as changes of terminology and standard names according to law amendment. The frequency of standardization by standard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dequacy review process or results were not disclosed clearly. As such, the study proposes various improve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namely, improving standardization for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detailed procedures for deliberation, and establishing evaluation standards for adequacy reviews.

Keywords: Records Management Standard,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Policy, Adequacy Assessment, Records Management Standard Managemen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표준(standards)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ISO/IEC Guide 2, 2004, 10). 생산된 기록을 체계적·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이며, 업무효율 향상 및 기록정보 이용 활성화와 기관 간 상호협력 등다양한 이유로 기록관리를 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기록관리 표준'이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인된 기준을 말하며, '기록관리표준화'는 기록관리 표준을 제정·시행하는 활동으로, 법령이나 표준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모범 실무(best practice)나 지침 및각종 매뉴얼·편람 등을 개발·운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기록관리표준의 범주에는 국가표준과 공공표준이 모두 포함되는데, 본 연구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공공표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39조는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을 제정·시행하게 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게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표준화는 2005년 기록관리 표준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기록관리 각 영역에서는 약15년 동안 많은 표준들이 제정되었다. 기록관리 표준들은 기록관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표준들을 제대로 살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오달리, 2012,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는 2016년 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표준의 관리체계, 준수의무 구분 등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기록물관리 표 준화 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표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고 표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진단하는 등 표준의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항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서는 표준의 제·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만이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표준화 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표준화 계획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표준들의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사유와 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정 기간동안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표준과 제정 이래 단 한건의 개정도 없는 표준들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수반되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부재하다는 것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제·개정된 표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표준이 잘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기록관리 체계의 발전과 개선을 촉진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 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현행 기록관리 표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 시하여 표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 리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법적근거와 절차를 톺아보고, 공공표준의 유 지관리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는 표준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의 연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표준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표준화 이력을 정리하고, 공공표준의 제·개정 이력에 대해 통계적 관 점에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기반으로 적정성 검토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가기술표준원 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ISO의 정기검토 절차(ISO, 2019)와 국가 기술표준원의 적부확인1) 절차(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43호)를 살 펴보고, 관련 법령 및 세부규정을 조사하여 기록관리 공공표준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 검토에 관한 심 의절차 및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도적 보완, 적정성 검토를 위한

¹⁾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국가표준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 은 국제표준의 정기검토,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와 그 맥락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세부 절차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기록관리 표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개별 표준을 중심으로 한 연구 또는 표준화 동향이나 정책 중심의 연구가 있는데, 그 중 표준화 사업이나 정책 전반을 다루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백지원(2003)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기록관리 표준화 활동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표준화에 대한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학계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원(2005)은 각국의 표준 및 동향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영역별로 정비되어야 할 표준의 유형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를 위해 어떠한 표준들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정비 추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 를 가진다.

또한 설문원(2009)은 그동안 추진된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과 추진내용을 평가하여 중장기 표준화 전략을 재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표준의 품질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 관련 정책 문서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준화 대상 선정의 적절성, 표준의 질적수준,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정책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성적 평가를 통해 기존에 만들어진 표준의실효성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수정을 제안하였다.

정연경(2016)은 2006년 이후 개발·배포된 공공표준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 10년간 진행된 표준화의 흐름

을 되짚어보고, 향후 기록관리 표준화의 방향 및 중장기 전략을 제언 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상위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의 표준화 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산업표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는 비교적 활발하고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표준들 도 이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관련 연 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표준화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남호, 박명규, 윤인찬(2003)은 국내 및 주요 국가의 표준화기구를 비교하여 국가 표준화체제의 정비를 통한 산업표준화 제도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였다. 각 행정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표준화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산업표준화 전문 요원을 조직적으로 양성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언하였다.

염슬기, 양정은(2021)은 국방규격 관리체계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 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우리나라 기록관리 표준화 또는 산업표준 체계나 정책과 관련한 개선안들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기록관리 표준 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개별 표준에 대한 분석 또는 표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표준화 체계에 대한 정비나 개선에 대한 연구는 2009년 이후로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준의 내용이나 개발을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유지·운영의 관점에서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적정 성 검토 수행의 잠재적 이점과 세부절차 및 기준,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공표준의 표준화 이력과 적정성 검토 현황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표준화는 표준화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추진되며 표준화 작업반, 표준화 협조부서, 표준화 주관부서,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반적인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절차는 표준화 계획수립, 표준안 작성·검토, 고시·의견조회, 표준 심의, 표준 확정의 5단계이다.

표준화 주관기관은 표준화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개발된 표준을 시의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용자들이 즉시 적용 가능토록 그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즉, 표준의 실수요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환경변화나 기술수준에 보조를 맞추는 방법으로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표준의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 국제표준화기구나 표준 제정기구 혹은 기관에서 규정으로 제정하여, 산업분야 변화 추세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시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구수, 2002, 20).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점검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표준화 개선 및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해 공 공표준에 대한 표준화 수요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표준의 활용 현황을 점검해왔다. 2009년에는 기록관리 표준화 업무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표준화 과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표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신청을 받아 표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자의 표 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표준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 하였다. 시행 중인 공공표준에 대해 원내 연구직 및 사서직과 각급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현장에서의 표준 활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기록원에서는 표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표준의 전면 정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관리체계를 보완·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에는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적합성 검토' 조항을 '표준의 적정성 검토'라는 표현으로 〈표 1〉과 같이변경하였다. 기존의 적합성이라는 용어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은 것을 의미하는데, 업무환경이나 제도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 기록관리 표준의 경우는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적정성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기록관리 표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적합성 검토)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제13조(표준의 적정성 검토) ①표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u>적합성</u>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토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u>적합성</u> 검토는 법령 개	② 적정성
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	
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u>적합성</u>	, <u>적정성</u>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출처: 국기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된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 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검토 방식 또는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된 표준의 적정 성 검토 실적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매년 표준화 계획 수립 시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표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체 표준을 대상으로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2) 또한 표준화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표준에 대해 정비한 바 있으며, 2022년 전체 표준에 대해 새로운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표준화 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수행되는 표준화과제 수요조사(원내 및 각급기관 대상)를 적정성 검토로 약식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표준화 과제 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원내부서와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표준화가 필요한 과제(제정·개정·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시급성이 높은 표준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표준화를 추진한다. 3) 해당 수요조사가 표준화 과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표준의 활용도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또한 가능케 하는 장점은 있으나, 검증을 목적으로하는 적정성 검토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제·개정 후 점검시기가 도래한 모든 표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 수요조사는 의견수렴 및 평가를 통해 선별된 표준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모든 표준

²⁾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청구(2022월 2월 8일).

³⁾ 국가기록원 연도별 표준화 추진계획.

에 대해 전체 실무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 적이고 임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을 토대로 충분히 검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부분 한 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적정성 검토가 모든 표준을 주기적으로 거치지 않고 예외가 발생하거나 단발성에 그친다면 각 업 무단계에서 필요한 기준 및 새로운 표준화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 려우며, 표준의 실효성이나 신뢰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표준이 양적 팽창으로부터 질적 향상으로 발전해오기까지 표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 펴보기 위해 약 15년 동안 시행된 개별표준의 개정 이력과 그 내용4)을 분석하고, 〈표 2〉와 같이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2〉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 이력 현황('22.12.26 기준)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연도	1차개정	개정횟수
(NAK-)	土土では	(년)	(년)	(호)
4:20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2007	2009	3
5-1:2014	기록물평가·폐기절차-제1부:기록관용	2007	2009	3
6:2022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7	2009	5
8:202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2007	2012	4
11-1:202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2007	2011	2
22:2009	22:2009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2009	1
29-1:20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2007	2009	6
29-1.2021	-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연계	2007	2009	0
7:2022	7:202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10	5
9:202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	2008	2015	4
	절차	2000	2013	4
12:2022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2008	2012	3
13:2022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2008	2011	2
11-2:20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2008	2021	1
23:2017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2008	2011	2
24:2008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2008	_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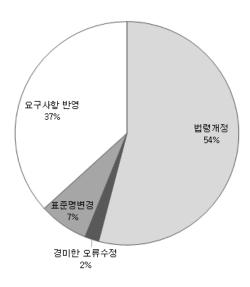
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관리 표준 현황 참조.

표준번호 (NAK-)	표준명	제정연도 (년)	1차개정 (년)	개정횟수 (회)
29-2:20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8	2014	5
30:2022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2008	2022	1
31-1:202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2008	2013	4
32-1:2022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 규격	2008	2011	2
32-2:20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2008	2011	1
1:202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009	2014	1
2-1:2012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09	2012	1
10:2022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2009	2012	4
29–3:20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09	2012	3
5-2:2022	기록물 평가폐기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010	2012	2
15:2021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2010	2012	2
16-1:202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2010	2012	2
17:2021	비밀기록물 관리	2010	2012	3
33:2013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2010	2013	1
2-2:2022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2012	2022	1
18:2022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2012	2022	1
19-1:2012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2012	_	0
16-2:202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	2013	2020	1
19-2:2013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2013	_	0
25:2022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2013	2022	1
26:2018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2013	2018	1
29-4:202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연계	2013	2021	1
20:2022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 스템 기능요건	2014	2020	3
27:2021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2014	2019	2

표준번호 (NAK-)	표준명	제정연도 (년)	1차개정 (년)	개정횟수 (회)
19–3:2015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2015	_	0
21:2018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2015	2018	1
31-2:202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2020	2022	1
35:20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관리기준표의 작성 및 이관규격	2020	_	0
36:2020	기록물 상태검사 지침	2020	_	0
37:2022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2022	_	0

기록관리 표준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98건의 개정 사유에 대해 유형을 구분하고, 개정 유형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사유 통계



전체 98건의 개정 중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54%이고,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표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정은 37%를 차지했다. 표준명칭이 변경된 단순 개정은 7%이고, 경미한 오류사항 수정으로 인한 개정은 2%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2012년과 2019년의 법령 개정 후속조치로 인한 표준의 개정이 17건에 달한다. 단 두 번에 걸친 법령 개정에 의해 다수의 표준이 개정된 것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통계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침과 구별되는 특징이고, 표준화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표준화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기록관리 정책방향에 따른 신규 표준 개발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공공표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적정성검토는 제도적・절차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존재한다.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표준이 개발되고 일정 시기가 도래했을 때이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일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기록관리 업무환경 구조가 근본 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표준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 초기와는 달리 제·개정된 표준이 업무 또는 운영상 적정한지 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표준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 인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표준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 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 사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표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국내외 사례

1)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표준화기관의 전 세계적인 연합체로서, 회원은 각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기구(National Standards Body)로 이루어지고 1개국 1대표 기구를 회원으로 한다. ISO 국제표준은 해당 분야의 국제 전문가들 간의 합의하에 개발되며, 정보의 최신성을 보장하고 국제환경에 부합하는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제·개정 후 5년 주기로 표준의 적부를 확인하는 정기검토(Systematic review)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표준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개정 및 유지(확인)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을 검토한다(ISO, 2019, 3).

제·개정 및 확인 후 5년이 도래한 모든 표준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ISO 산하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기술위원회들은 제정·개정·폐지·확인 표준안을 심의하고, 이 모든 과정은 중앙사무국에 의해 전자적으로 관리된다. 중앙사무국은 각국의 ISO 회원 기관⁵⁾으로 하여금 표준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투표를 진행하며, 회원 기관들은 투표용지 수령 후 20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ISO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각국의 표준화 기관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취합된 투표결과와 관련 자료를

⁵⁾ National Standards Body,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에 해당한다.

첨부하여 회람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ISO 국제표준의 정기검토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주체와 과업을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ISO 국제표준의 정기검토 단계별 업무

단계구분	주요내용	수행주체
1. 투표용지 작성 및 이해관계자 협의	국가표준화기구는 ISO 중앙사무국으로부터 정기검토를 위한 투표용지를 받고,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협의한다.	국가표준화기구
2. 정보입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는 국가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고, 국가 표준화기구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기검토를 위한 답변을 작성하고 투 표를 실시한다.	투표 응답자: 국가 전문위 원회, 이해관계자, 국가표 준화기구 직원
3. 분석 및 의사결정	기술위원회 간사는 정기검토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조치를 권고한다.	ISO 위원회 간사

※출처: ISO(2019) p.13 발췌 후 재정리.

우리나라는 ISO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 분야별로 지정하고 있으며(「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ISO 포털(Portal)과 국제표준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ISO 포털은 ISO eCommittee라고도 부르며, 표준의 정기검토를 포함하여 ISO의 모든 공식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국내 전문가와 위원회가 수행하는 표준화 활동 지원과 기록을 위해 ISO 회원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운영된다(국립환경과학원, 2022, 10-11).

ISO 정기검토 투표는 해당 표준의 국가적 이용도가 활발한지에 대해 여부를 묻는 질의들로 구성되며, 국제표준, 기술시방서, 기술보고서 등 에 대해 개정 또는 수정, 폐지 또는 유지(확인) 여부를 검토한다. 전문 위원회 의견 회람 및 취합한 의견을 기반으로 하나의 최종 검토의견서 를 투표자에게 전달하여 ISO 포털에 공식 등록하게 되며, 구체적인 과 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우리나라의 ISO 국제표준 정기검토 의견 제출 절차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22) p.62 발췌 후 재정리.

ISO 회원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별 하나의 투표권만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 투표를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묻고 회부하기 용이하도록 한 글로 옮긴 국내검토서를 소관 전문위원회에 회람한다. 투표 기한 내에 위워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하나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 고, 최종 투표 결과는 전문위원회에 공유하여 알린다. 표준담당관은 취 합된 의견서와 ISO 의견 양식(Commenting template)을 투표자에게 회신 하고, 투표 담당자는 최종 투표 결정에 따라 ISO 포털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를 입력함으로써 공식적인 투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국립환 경과학원, 2022, 62).

앞에서 언급했듯이, ISO 기술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및 투표 자료를 토대로 표준안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표준안이 확정되고 고시된다. 이때 회의 보고서가 함께 등록되는데, 이 회의 보고서는 작업반이나 기술위원회의 공식 회의 내용이 기록되는 공식 문서이다(ISO/IEC, 2021, 86-87). 회의 일정(Meeting Agenda)에 기재 된 항목에 따라 회의 내용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의 참가자 명단을 포 함하므로 국가별 참가자 수와 활동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논의한 안 건과 논의 결과를 기록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둘러싼 제반 활동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박주상, 김소영,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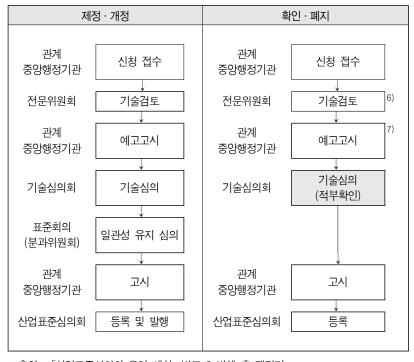
정기검토에서 심의되는 표준안 중 '확인'은 기술적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표준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데 무리가 없고 지속 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확인으로 결정된다. 최소 5개국에서 표준이 활용되어야 하며, 기술위원회의 정회 원 중 과반수가 인준한 경우에 표준안이 확정된다. ISO에서는 확인이 완료된 표준에 대해 홈페이지에 정기검토 여부 및 심의 결과를 개별적 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 목록들도 함께 고시된다.

이와 같이 ISO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기존 표준들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거나 더 이상 활용성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폐기하는 등 표준의 주기적인 검토 및 유지보수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ISO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표준 개발이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공공표준의 특성에 적합한 검토 주기나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성 검토현황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2)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SO 회원기구로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에 대한 표준화를 주관한다.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산업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기록관리 국가표준은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산업표준에 해당한다. 즉, 산업표준화

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에 의해 운영되고 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KS)이다. 표준화절차는 〈그림 3〉을 통해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림 3〉 KS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절차

※출처:「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별표 3 발췌 후 재정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해야 한다. 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

^{6) &#}x27;폐지'의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서 기술검토하고, '확인'은 기술심의회에서 검토한다.

^{7) &#}x27;페지'의 경우에만 예고고시하고, '확인'의 경우에는 예고고시를 생략한다.

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고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업표준화법」 제10조).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이 늘 제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표준의 적부확인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국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은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심의회는 표준의 제정·개정·폐지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43개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8) 기술심의회 회장은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에는 표준의 제정·개정·폐지뿐만 아니라 확인도 포함하여 고시유형을 구분해두고 그 건수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의개최 실적과 표준안 심의 실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참여율, 심의결과, 표준의 적부확인 계획 및 실행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

적부확인 심의를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수반되는데, 한국산업표준의 경우 적부확인이 필요한 모든 5년도래 표준들에 대해 각 분야별 기술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는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수준, 산업계 동향, 기술의 변화, 다른 산업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심의 회 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다.》 즉, 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은 체 크리스트와 같은 규범적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수가 집단적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동시

⁸⁾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확인(2022년 12월 23일).

⁹⁾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확인(2022년 05월 13일).

에 검토되어야 하는 표준의 개수가 많고, 관련 기술검토를 위한 심의회 도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한국산업표준의 특성상 적합한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기술검토 및 심의를 통해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를 독려하고 있으 며, 이는 각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기준 및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다. 적부확인을 거쳐 유지가 확정된 표준은 표지에 명시하고,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확인표준으로 고시 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은 〈표 4〉와 같이 상위 법령을 기 반으로 이에 합치되는 행정규칙까지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모든 표준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표준화 관련 법령체계

1	헌법	제127조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2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각 표준과 기준이 국제표 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3	산업표준회법	KS 제·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 의회 운영
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소비자 안전 및 제품의 품질항상을 위한 KS 인증제도 운영
5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표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적부확인 등)
6	범부처 소관 규정(예규)	ISO 간사기관 운영 지침 등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22) p.100 발췌 후 재정리.

표준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절차적 완결성 을 갖추 주기적인 점검에서 비롯되다. 표준화 결과가 타당성을 얻기 위 해서는 적합한 절차 및 평가기준에 기반을 둔 적정성 검토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에 비추어, 표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적정성 검토의 중요성을 주지하고, 기록관리 공공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절차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개선 방안

1) 제도적 보완

ISO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이 5년 주기로 정기검토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기록관리 표준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개정 후 3년마다¹⁽⁰⁾ 확인주기가 도래한 모든 표준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표준들에 대해서는 3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필요시 점검하도록 한다.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표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를 표준화 계획에 반영한다는 조항만 존재하는 것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준 이용자들로 하여금 검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나 수단이 부족하여 표준화 계획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성 검토 과정과 내용이 이해관계자 및 이용자에게 공유되는 국제표준의 사례에 비추어, 확인이 완료된 표

¹⁰⁾ 본 연구는 특정일자나 시점보다는 '정기적 검토'체제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행「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에서도 '3년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토 주기를 3년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설문원(2009)의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방안」 연구에서 호주 PROV(Public Record Office Victoria)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표준문서의 유형별로 검토주기를 달리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하여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준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해당 표준의 표지에 포함하거나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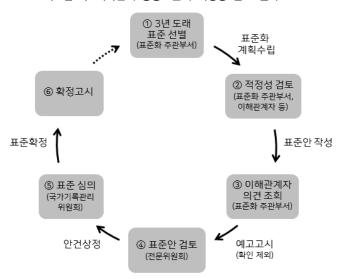
다음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기능에 '표준의 적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산업표준의 경우 주요행정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되 적부확인에 관한 심의는 기술심의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심의영역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적정성 검토에 대한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기록관리 표준도 하위 규정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임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위 규칙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위임규정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가장 큰 특징이다. 제·개정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법률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적부확인의 이행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공표준의 경우 기록물관리법에서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훈령「기록물관리 표준화업무 운영 규정」에 표준의 적정성검토 의무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행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성검토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세부 절차 및 평가기준 마련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표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확산을 위한 기록물관리법 령 및 규칙 등 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절차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 현체계 속에서 기록관리 표준의 적정성 검토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세부절차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절차도

현행 표준화 과정에서는 주로 공공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기존 과업에 더하여 표준화 주관부서에서 제·개정 및 확인 후 3년이 도래한 표준들을 선별하여 표준과제에 포함 시키도록 하였다. 표준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검토와 심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된다. 적부확인이 필요한 표준들은 표준화 주관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이 평가기준을 토대로 적정성 검토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¹¹⁾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이 과정을 심의회에

¹¹⁾ 국가기록원은 2022년 12월 13일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제13조의1을 신설하여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주관부서 및 각급기관 기록 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전히 일임하지 않은 이유는 기록관리 표준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표준의 이용자가 명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2022).12)

더불어 표준의 적부확인에 대한 사전심의는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3) 표준화 주관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 전문적 사항에 대해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의 검토 후 국가기록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 최종 심의를 거쳐 표준화 주관부서에서 확정고시 및 등 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제언할 사항은 표준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에 관한 것 이다. 표준의 유지 ·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 관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근 거로 연관성 있는 평가요소들을 설정하였다.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 규정에서 언급되는 기준 3가지는 필수 검토 항목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 국제표준과 한 국산업표준의 표준안 심의 기준에 근거하여 5가지 평가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토대로 개별 검토 항목들을 〈표 5〉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¹²⁾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표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산업 표준은 전체 21,43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227종에 대해 적부확인이 이루어 졌다. 한편 기록관리 공공표준은 44종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필자는 이를 바탕 으로 많은 양의 기술표준이 운영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한국산업표준에 비 해 기록관리 공공표준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이용자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¹³⁾ 전문위원회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해당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표 5〉 기록관리 표준의 적정성 검토 평가기준

검토 사항			예	아니오
1	법률 부합 여부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2 업무 적합 여부	•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되어 업무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가?			
	립구 역합 어구 	• 내용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준 이 있는가?		
31	환경변화 반영	● 기록관리 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른 동향을 적절 히 제공하고 있는가?		
	여부	● 기록관리 국가표준의 내용에 부합하고 관련 지 침이 일치하는가?		
	표준정책 부합	• 내용이 국가 기록관리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가?		
4	여부	● 표준화 정책에서 요구하는 시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5	이해관계자 검토 여부	• 표준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사전에 적절히 이 루어졌는가?		
		• 관련 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제시한 검토 기준 중 첫째는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언급되는 법령의 개정과 관계되는 것이고, 둘째와 다섯째는 표준을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영상의 보완사항에 관한 것이다. 셋째와 넷째는 기록관리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표준이 국가표준의 내용에 부합하고, 시의성 있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준을 정하였다. 다만, 이 평가기준은 표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단일지표가 아닌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표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기록관리 분야

의 각 표준들은 기록관리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는 필수적이며 표준의 개발, 유지·관리, 활용 등 모든 영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제도와 절차들이 균형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공공표준 운영체계의 발전을 위한 선결요건 중 하나인 적정성 검토 절차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표준제도의 현황과 표준화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ISO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를 통해 표준에 대한 정기검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표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표준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의 전면 정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가기록원의 연간 표준화 추진 계획에 따른약 15년간의 표준화 이력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를 통한 개정보다는 법령 개정이나 표준명칭의 변경에 따른 단순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준별 표준화의 빈도차이또한 현격하여 형식적이고 성과주의적인 표준화 추진이라는 인식이 우려된다.

현행 표준화 절차는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해 마련된 절차로, 이 과정 중「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에서 정한 표준의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그에 대한 결과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비점도 존재하였다. 이는 표준의 적정성 검토 주기나 방식에 대한 세부규정이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일관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한 검토·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모든 표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록관리 표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개정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적정성 검토 주기를 '제·개정 및 확인 후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3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표준 이용자들로 하여금 표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쉽게 알수 있도록 별도의 고시나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확인 이력을 표준의 표지에 포함하거나, 관련 규정에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적정성 검토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기능에 '표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영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성 검토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하위 규정 간 정합성을 갖추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표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는 표준화 주관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이 선행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회를 통해 적부확인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법령의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필수 검토 항목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 관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방안들이 지속성을 유지해야 분명한 순환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절차적 완결성이 바탕이 된다면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표준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 표준화에 관련된 연구가 2009년 이후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행 공공표준과 표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준의 적정성 검토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적정성 검토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기록관리표준화를 위한 각 요소들의 균형과 체계적인 운영은 국가차원에서도

더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05-2022).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2022) 국가기술표준원 통계
- 국립환경과학원 (2022), 환경분야 KS·ISO 표준 업무편람, 11-1480523-004697-01.
- 김구수 (2002). 정보통신단체표준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제언. TTA 저널, 81, 19-28.
- 박주상, 김소영 (2015). ISO 표준화에서 주요국 활동 양상 분석: JTC 1/SC 31/WG 7 사례와 후발국 시사점. 기술혁신연구, 23(3), 201-223.
- 백지원 (2003). 기록관리 분야의 표준 및 표준화 활동 분석. 한국기록학연구, 7, 3-35. https://doi.org/10.20923/kjas.2003.7.00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2), 2021 국가표준백서,
- 설문원 (2005). 국가 기록관리 표준 정비의 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81-96. https://jksarm.accesson.kr/v.5/1/137/1091
- 설문원 (2009). 준현용 기록관리 표준화의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355-377.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355
- 설문원 (2009).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 20(3), 81-96. http://koreascience.or.kr/article/IAKO200933063803592.page
- 성면섭, 김장환 (2021).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건 분석을 통한 국회기록관리 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4), 201-221. https://jksarm.accesson.kr/v.21/ /201/10063
- 염슬기, 양정은 (2021). 국방 표준화지정기관 제도 운영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1), 228-235.
- 오달리 (2012). 기록관리 표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 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정연경 (2016). 기록물관리 표준의 평가와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 기록인, 36, 62-67.
- 조남호, 박명규, 윤인찬 (2003). 산업표준화 제도의 발전방향연구. 산업경영시스템 학회지, 26(2), 9-22.
- 최재진, 정순석, 김광수 (2019). 표준 연결망을 활용한 표준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47(2), 315-325.

행정안전부 (2022).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ISO (2019). Guidance on the Systematic Review process in ISO. 출처: https://www.iso.org/publication/PUB100413.html

ISO/IEC (2021). ISO/IEC Directives, Part 1-Consolidated JTC 1 Supplement 2021-rocedures specific to JTC 1. 17th.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72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국가기록원훈령 제186호.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 규정. 국가기록원훈령 제219호.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52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25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43호.

〈참고 사이트〉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next/newdata/standardCondition.do?glSeCd=05 국가기술표준원. https://kats.go.kr/content.do?cmsid=364 국제표준종합지원시스템. www.i-standard.kr/subPage.php?mode=1&bo_table=notice